



감사위원회 운영규정

2024. 2. 5.

주식회사 디알비동일

감사위원회 운영규정

제1장 총칙

제 1 조 목적

이 규정은 감사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가 감사업무를 적정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직무수행의 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적용범위

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, 정관 또는 이사회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 3 조 독립성

위원회와 위원은 회사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
제 4 조 직무와 권한

- ① 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.
- ② 위원회는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.
- ③ 위원회는 제 1 항 내지 제 2 항 외에 법령, 정관 또는 이 규정에서 정하여진 사항과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.

제2장 구성

제 5 조 구성

- ① 위원회는 3 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, 사외이사가 3 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.
- ② 위원회 위원(이하 "위원"이라 한다)은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선임하며, 위원 중 1 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한다.

- ③ 위원 중 1인 이상은 상법 제542조의11 제2항에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여야 한다.
- ④ 위원이 사임,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 3 항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위원회의 구성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.
- ⑤ 위원은 상법 제 434 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 1 항에 따라 분리선임한 위원은 이사와 감사위원회 위원의 지위를 모두 상실한다.

제6조 위원장

- ① 위원회는 제 11 조 규정에 의한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위원장을 선정하여야 한다.
-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,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별로 업무를 분장할 수 있다.
- ③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소속위원중 선임자,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3장 회의

제7조 종류

-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개최한다.
- ② 정기회의는 매분기 1 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③ 임시회의는 필요할 경우 개최할 수 있다.

제8조 소집권자

-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
- ②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.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요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제9조 소집절차

- ① 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 3 일 전까지 회의개최 일시, 장소 및 부의할 안건을 각 위원에 대하여 등기우편, 전자적 방법, 전화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- ② 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동의를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.

제10조 부의사항

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결의한다.

1.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

- (1) 이사회에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청구
- (2) 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조사 및 진술

2. 이사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

- (1) 이사의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 등에 대한 이사회 보고
- (2) 주주총회에 제출할 재무제표 등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작성 제출
- (3)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
- (4) 이사에 대한 영업보고 요구
- (5)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
- (6)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실태 평가 결과 보고
- (7) 감사위원회 성과 평가 결과 보고

3. 감사에 관한 사항

- (1)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 조사
- (2) 자회사의 조사
- (3) 이사의 보고 수령
- (4) 이사와 회사간의 소송의 경우 소에 관한 회사의 대표
- (5) 소수주주의 이사에 대한 제소 요청시 소제기 여부 결정
- (6) 외부감사인(이하 '감사인' 이라 한다) 선정 및 변경·해임
- (7) 감사인으로부터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요한 사실의 보고수령
- (8) 감사인으로부터 회사가 회계처리 등에 관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사실의 보고수령
- (9) 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
- (10) 감사인의 독립성 평가
- (11) 감사인이 회사와 연결대상회사에 제공하는 감사 및 비감사용역에 대한 사전승인(단, 비감사용역에 한하여, 감사위원회 소집이 어려울 정도로 시간적 여유가 없고 그 금액이 연간 감사용역의 5% 이내인 경우에는 위원회로부터 사전에 권 한을 위임 받은 감사위원이 사전승인을 할 수 있다. 이 경우 감사위원회를 소집하여 그 사전승인 경위와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.
- (12) 감사결과 시정사항에 대한 조치확인
- (13) 감사인의 선정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의 승인
- (14) 연도 감사계획 및 결과 수령

- (15) 회사가 감사인 지정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그에 대한 승인
- (16) 회사가 지정감사인을 다시 지정하여 줄 것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그에 대한 승인
- (17) 중요한 회계처리기준이나 회계추정 변경의 타당성 검토
- (18) 기업재무활동의 건전성과 타당성 및 재무보고의 정확성 검토
- (19) 내부감사책임자에 대한 임면 동의 및 해임 건의
- (20) 내부통제제도(내부회계관리제도 포함)의 평가
- (21)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수령
- (22) 내부회계관리규정 제·개정에 대한 승인
- (23) 내부고발제도의 설치
- (24) 감사위원회의 준법지원인 평가

4. 기타 관련법령 및 정관이 정하는 사항

-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다음 사항에 대해 보고하게 할 수 있다.
 - 1. 내부감사조직의 감사활동
 - 2.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 11 조 결의방법

-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동영상 또는 음성을 동시에 송·수신 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- ② 위원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 이 경우 행사가 제한되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위원의 의결권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제 12 조 관계인의 출석 등

-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임직원 및 감사인을 회의에 참석시켜 관련자료 및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.
-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.

제 13 조 의사록

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출석한 감사위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감사위원회의 회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보관한다.

제4장 외부감사인의 선임 등

제 14 조 감사인의 선임

- ① 위원회는 회사가 선임할 감사인을 선정한다.
- ② 감사인을 선임하는 때에는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 감사인으로 하여 최초의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에 선임하여야 한다.
- ③ 위원회는 감사인의 감사보수와 감사시간, 감사에 필요한 인력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정하여야 한다.

제 15 조 감사인의 변경

회사는 감사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어 다시 선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2월 이내에 위원회가 선정한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.

1. 감사인이 파산 등의 사유로 해산하는 경우(합병으로 인한 해산의 경우는 제외한다)
2. 감사인인 회계법인이 공인회계사법 제 39 조 제 1 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된 경우
3. 감사인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(이하 “외감법”이라 한다) 제 9 조의 2 제 5 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
4. 감사인이 외감법 제 29 조 제 3 항 또는 제 4 항에 따른 조치로 해당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경우
5. 그 밖에 감사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회계감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

제 16 조 감사인의 해임

회사는 감사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 중이라도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위원회가 해임요청한 감사인을 해임하여야 한다.

1. 감사인이 회사의 기밀을 누설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
2. 감사인이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
3. 감사인이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압력을 행사한 경우
4. 외자도입계약 등에서 감사인을 한정하고 있는 경우
5.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 15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 또는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결과 감사인이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

제 17 조 전기감사인의 의견진술권

- ① 위원회는 직전사업연도에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행한 감사인(이하 "전기감사인"이라 한다)외의 다른 감사인을 감사인으로 선정하거나 제 16조에 의하여 감사인을 해임요청하려면 전기감사인 및 해임요청하려는 감사인에게 새로운 감사인과의 감사계약 체결 2 주 전까지 문서 또는 구술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는 사실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.
- ② 회사는 제 16 조에 따라 해임되는 전기감사인이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권선물위원회에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.
 1. 전기감사인을 해임한 이유
 2. 전기감사인이 진술한 의견
 3. 감사위원회 위원 전원이 제 1 호 및 제 2 호의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한 사실

제 18 조 감사인의 독립성 확보

위원회는 감사인과 회사와의 관계에 관련된 주요사항을 비롯하여 외부감사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, 외부감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적절한 의견을 이사회에 개진할 수 있다.

제 19 조 감사인과의 의견교환

위원회는 감사인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며 회사의 내부통제 및 회사 재무제표의 적정성 등에 관하여 감사인과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.

제5장 보칙

제 20 조 감사위원회 지원

-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내부감사부서를 활용하거나 필요할 경우 회사에 감사위원회 지원을 전담하는 부서의 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.
- ② 내부감사부서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내부감사 규정에 정한다.
- ③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경우 ‘설치, 운영, 전문인력의 임용 및 운영비용’ 등 기타 필요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.
- ④ 위원회의 감사업무와 관련하여 회사로부터의 요청에 의하여 감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 21 조 감사록의 작성

- ① 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- ②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.

제 22 조 감사위원회 성과 평가

- ① 위원회는 연 1 회 위원회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.
- ② 위원회는 연 1 회 위원회 운영규정의 개정 필요성을 검토하고 평가하여야 한다.

제 23 조 규정의 개정

이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.

부 칙

- ① 이 규정은 2022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이 규정은 2024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.